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2221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은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공유자 지분 2분의 1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9.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공유자 지분 2분의 1 중 2/7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접수 제465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순차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합계 8,660,099원 및 그 중 원금 3,822,6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02108,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선행소송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19. 1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 1) E은 2020. 9. 13.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7), 자녀인 C, F(각 법정상속분 2/7)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 2) 피고와 C, F는 E의 사망 무렵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C, F는 각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 사건 분할협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접수 제46579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한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한 상속권 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 중 C의 상속분 2/7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유무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선의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1974년경 E과 혼인하여 2020. 9. 13. E이 사망할 때까지 약 46년 동안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E과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09. 9. 1.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동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기여한 정도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는 이후 E와 함께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와 같이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 즉 자신들의 부친 또는 모친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태로 상속분을 이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보편적인 도덕관념, 생존한 배우자의 기존 생활양식 유지, 부부공동재산의 실질적 정산, 부모에 대한 자녀의 봉양 등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 2분의 1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켰다고 하더라도, E, C, 피고의 관계, 이 사건 분할협의를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재산적 처분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에 충분하다.

○ C은 E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지 약 7개월 뒤인 2010.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C은 실제로는 위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현재도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에 원고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주민조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송달을 하지 못하여(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E, F 등

가족들은 C에 대한 법원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피고로서는 C의 원고에 대한 부채를 비롯하여 C의 전반적인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C의 주소지인 이 사건 부동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우편물 등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채무초과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소송 과정에서 피고를 비롯한 C의 가족들이 C에게 발송된 법원 우편물을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위 선행소송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신용카드 대출금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행사건 당시 원리금 합계액이

8,660,099원(원금은 3,822,615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C은 이 사건 선행사건의 판결 선고 시점인 2019년 당시 사업소득 30,897,130원, 근로소득 1,390,000원의 소득을 얻는 등 자체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를 비롯한 C의 가족들로서는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C의 원고에 대한 변제자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양승우

